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법률 제7374호(2005.1.27)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이 변경되어 2005.7.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의 개정필요

2.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중 시설개선 용자사업 대상자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였으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에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 식품위생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업자”를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하며, “시설개선 및 영업”을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8호로 한다.

1. “영업자”를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영업시설개선”을 “위생관리시설개선”으로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한다.
4.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을 신설한다.
8.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을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 중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식품위생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u>식품위생법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식품위생법」</u> ----- ----- ----- ----- ----- ----- <u>「식품위생법시행령」</u> ----- ----- ----- -----	식품위생법제71조 제3항의규정이(법률 제 7 3 7 4 호 , 2005.1.27)공포되어,2005.7.28로 시행됨에 따른 정비
제2조(정의) 1. 영업자 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 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영업자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u>) ----- ----- -----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 <u>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u> ----- -----	
제4조(기금의 용도)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제4조(기금의 용도) 1. 영업자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u>)의 <u>위생관리시설개선</u> -----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u>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u>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3. (생략) 〈신설〉 4~6. (생략)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 ④기금의 출납은 <u>구미시재무회계규칙</u>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u>시설개선자금</u> 용자 제9조(용자사업) 시장은 구미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u>시설개선자금을</u> 필요로 하는 자에게 <u>시설개선자금</u>을 용자할 수 있다. 제11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u>시설개선자금</u>의 용자한도 및 상환조건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u> 5~7. 현행과 같음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u>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u>-- ----- ----- 제5조(기금의 운용) ④-----「<u>구미시 재무회계 규칙</u>」----- ----- 제3장 <u>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u> 용자 제9조(용자사업) ----- ----- <u>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u>----- <u>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u>----- ----- 제11조(용자한도 및 상환조건) <u>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u>----- -----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의규정이 (법률제7374호, 2005.1.27)공포되어, 2005.7.28로 시행됨에 따른 정비

참 고 자 료

□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③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71조의2 (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다음 각목의营业을 말한다.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 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3) 삭제

(4)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7) 삭제

(8)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식품판매업 : (4) 내지 (8)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쬔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을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
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
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
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43조 (기금의 운용) ⑦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